





## 임대차계약 최초/변경신고 매뉴얼



1 회원로그인 을 클릭합니다.



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. (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주세요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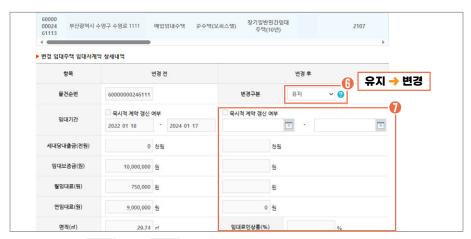


③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→ 임대차계약 최초/변경신고 를 클릭합니다.



신고구분	변경 선택	5) 임대자계약 정보 조회
-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 - '임대차계약 7		경우, 신교구분을 '석소'도 선택 <mark>합</mark> 니다. 이후 추가로 신교하는 경우 신교구분을 '변경'으로 선택합니다.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경조회
70+287	검색인구분	<ul> <li>※ 개안 ○ 범인</li> </ul>
신고번호 2022	대표자(신청인) 주민동특번호	910627
□ 임대사업자 대표 성명	신고번호 조회	현황 (해당 자료를 다볼 클릭하시면 됩니다.)

- ① 신고구분에서 변경 을 선택합니다. (임대주택을 처음 등록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최초 를 선택해주세요.)
- [5]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. 대표자 주민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여인증수단(공인인증서, 금융인증서)으로 인증합니다.



- ⓑ 변경구분을 유지 에서 변경 으로 선택합니다.
- 임대주택 상세내역의 빈칸을 작성해주세요. 변경 신고하는 물건지와 호실이 맞는지, 첨부하시는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한번 더 확인 바랍니다.

### 임대차계약 최초/변경신고 매뉴얼



- ③ 작성 중인 신고를 임시저장하는 기능으로, 신고할 호실이 많은 경우 수시로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③ '구비서류'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뜨게 됩니다. 해당하는 서류의 '업로드' 버튼을 누르고 표준임대차계약서, 보증보험 관련서류 등의 사진 혹은 스캔본을 첨부해주세요.
- 🔟 입력하신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신 후 🗍 민원신청 🗎 클릭해주세요. 새 창이 뜨게 됩니다.



① (민원신청)을 클릭했을 때 뜨는 창입니다. \* 표시가 되어있는 빈칸을 모두 작성해주세요.
 작성 후 (확인) 버튼을 누르면 (2) 의 인증 창이 뜨게 됩니다.



<mark>(2)</mark> - 사업자민원신청인
▮ 사업자민원신청인
▶ 신청인정보 - 성명:홍길동
<ul> <li>▶ 전자서명</li> <li>◎ 주민(법인/외국인)등록번호 ○ 사업자등록번호</li> </ul>
주민(법인/외국인)등록번호 : ( ) -
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신청 합니다. 민원신청을 하시겠습니까?
※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」및 「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」에 의해 18시 이후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민원은 익일(공휴일, 토요일 제외) 해당 지자체에 접수/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민원신형 취소

②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하단의 인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수단 (공인인증서, 금융인증서)을 통한 인증을 하시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.



# **임대주택 주소지** 호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1111 101호

		신고 계약।	 내용		
순번	신고일	계약 기간	보증금	임대료	묵시적 갱신 시 신고예정일
1	23. 1. 5.	23. 1. 2. ~ 25. 1. 1.	500만	10만	25년 1월 ~ 3월
2	24. 1. 8.	25. 1. 2. ~ 27. 1. 1.	500만	0	(3개월 이내)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


임대주택 주소지	호실

		신고 계약내용			묵시적
순번	신고일	계약 기간	보증금	임대료	묵시적 갱신 시 신고예정일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
임대주택 주소지	호실

		신고 계약내용			묵시적
순번	신고일	계약 기간	보증금	임대료	갱신 시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


임대주택 주소지	호실

		신고 계약내용			묵시적
순번	신고일	계약 기간	보증금	임대료	묵시적 갱신 시 신고예정일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
임대주택 주소지	호실

		신고 계약내용			묵시적
순번	신고일	계약 기간	보증금	임대료	갱신 시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
#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안내



#### 임대의무기간 👼

- 임대의무기간 : 신규 등록 시 장기일반 10년
- ▶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매각 또는 본인 거주 불가
- \* 임대주택 양도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(임대사업 예정자)에게 매각하는 경우만 매각 허용 매매계약서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 명시해야함 (증여, 상속의 경우에도 양도신고는 필수!)

#### 임대차계약 신고 🖹

- ▶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(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) 3개월 이내 물건 소재지 구청에 신고
- 필요서류: ① 표준임대계약서
  - ② 보증보험 관련서류 (면제사유인 경우 임차인동의서 등)
  - ③ (오피스텔의 경우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#### 임대료 증액 제한 📞

- ▶ 직전 계약 1년 이내 임대료 인상 불가, 1년 경과 후 5%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(세입자가 바뀌어도 증액 제한 허용)
- ※ 임대료 인상 계산 : 렌트홈(http://www.renthome.go.kr) 계산기로 확인 가능

#### 부기등기 🔉

- ▶ 20. 12. 10. 법 시행 :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지체없이 부기등기 하여야함.
- ◊ 신청 방법 : 필요서류 구비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
- ▶ 필요 서류 : 임대사업자 등록증,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

#### 임대보증보험 ₩

- ❷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
- ▶ 보증보험 가입 면제사유 → 뒷장 참고
- ♪ 가입 문의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우리은행 전국지점

수영구청 건축과 🗞 610-4584, 4585, 4586



